

건설이슈포커스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지급방안 검토

2009. 11. 20

빈재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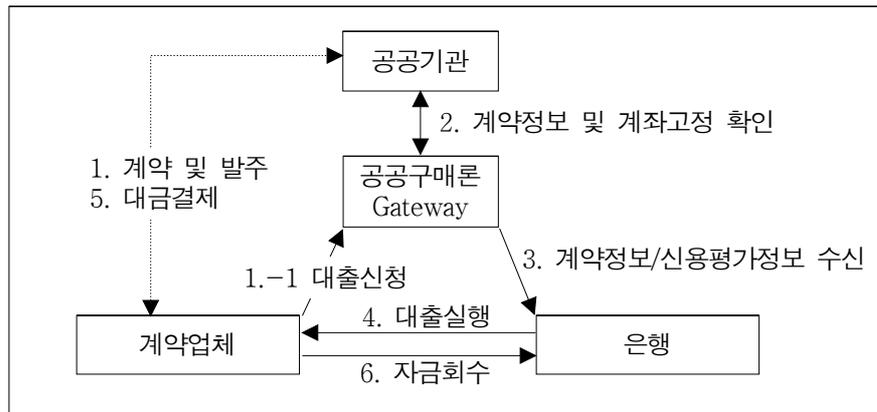
요 약

- ▶ 정부의 하수급인보호제도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수급인에게는 실효를 발휘하고 있으나,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비롯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중층구조의 하도급관계를 모두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관련 법령이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하수급인 보호제도가 정부의 규제를 통해 작동할 가능성은 낮음.
- ▶ 규제강화라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로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원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과 해당 원수급인이 추천한 전문건설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수급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자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체에게 지불할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임.
-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의미하고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의 가능성을 의미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전문건설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간에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구축으로 귀결될 수 있음.
- ▶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 방안 모색 필요
 - 건산법상 원수급인의 상호협력평가지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활용하는 하수급인과 협력관계를 체결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이용실적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게 세제를 지원하거나 세금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그러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유용할 것임.
- ▶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성화는 민간 금융기관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구매자금 결제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는바, 이를 위해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기업정보를 이미 축적하고 있는 건설관련 단체 혹은 건설산업 관련 공제조합이 마켓 플레이스, 보증기관 혹은 금융기관으로서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

1. 검토배경

-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포괄보증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에 투자된 자금이 원·하도급 구조를 따라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와 기능인력까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함임.
- 정부의 하수급인보호제도는 원수급인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맺는 하수급인에게는 실효를 발휘하고 있으나, 하수급인과 계약을 맺는 자재·장비 업체를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관련법령이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수급인과 계약을 맺는 자재·장비 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하수급인보호제도가 정부의 규제를 통해 작동할 가능성은 낮음.
- 정부는 조달시장에 공공구매론을 도입했는데, 이는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현금원활화를 도모하는 사례임.
- 공공구매론은 정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금융 자금이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될 수 있도록 공공 발주기관, 수주한 중소기업, 민간 금융시스템 및 신용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금융지원 네트워크 시스템임.
- 현재 공공구매론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철도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촌공사 등 209개 기관이며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299건 389억원의 실적 발생

<그림 1> 공공구매론 온라인 시스템 구축 개요도



자료 : 하수급인보호제도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 규제강화라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하수급인과 거래하는 자재·장비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로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과 해당 원수급자가 추천한 전문건설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수급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그와 거래하는 자재·장비업체에 지불할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임.
- 공공구매론은 공급자 금융이고,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구매자 금융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물품 및 서비스 구매계약시 경제적 약자에게 현금결제의 혜택을 준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공유하고 있음.
- 공공구매론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하수급인과 그와 거래하는 자재·장비업체뿐만 아니라, 보증기관, 금융기관,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 등이 참여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도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정부 혹은 건설 산업 및 금융을 대표하는 기관이 중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수적임.
-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민간 금융기관이 건설산업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구입자금 결제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여부임.

2. 하도급인보호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한

- 건설법 제34조는 원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 하도급법(제13조 제5항)에서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하도급법은 ①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해야 함; ②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함; ③ 원수급자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함 등을 규정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부도사태로부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 금액의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서를 원수급자가 발부받아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는 제도
- 원수급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을 대지급함으로써 원수급자의 부도 등에 따른 하수급자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음.

(3) 하도급대금지직접지급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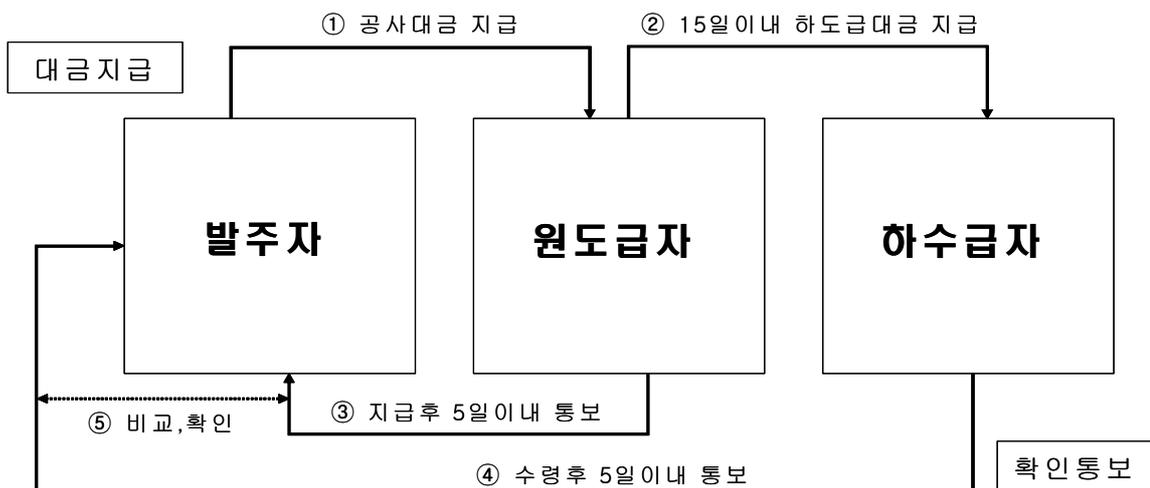
-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주자가 원수급자와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 2009년 3월부터 국토부는 원수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에 적

용되던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불제를 1회 지연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4)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 원수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수급인이 수령한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제도
-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 등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1월부터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음.

<그림 2>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 1. 29) 『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5) 현행 하수급인보호제도의 문제점

- 위에서 언급한 하수급인보호제도는 발주자가 공공부문인 경우, 그리고 원수급자와 직접 계약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 2009년 2.18~2.25까지 주공 등 29개 산하기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인 원수급업체 3,262개 중 3.8%인 123개 업체 5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 건설 현장의 중층적인 하도급구조를 감안할 때,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하는 자재장

비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

- 국토부가 2009년 7~8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 소속 산하기간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자재·장비 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원수급자의 경우 130개(조사대상 4,016개 중 3.2%) 업체, 65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반면,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323개(조사대상 9,144개 중 3.5%) 업체, 3,091건의 위반사례 적발
- 원수급자와 하수급인 중 위반업체의 비중은 유사하나, 하수급인의 위반사례 건수가 원수급인의 위반사례에 비해 많은데, 이는 하수급인 자격으로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일부가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자재 및 장비 구매자금을 원활하게 결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금지급에 대한 규제보다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

3. 전자상거래보증제도와 도입 필요성

(1) 도입 필요성

-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가 356개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156개사로 전체의 44%에 불과함.
- 나머지 기업 중 196개사가 대금을 어음과 현금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남.
(4개 기업 무응답)
- 어음을 이용하는 기업 중 147개사가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하고 있음.
-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은 현금화기간이 너무 길어 자재 및 장비 업체의 자금순환에 장애를 초래
- 어음을 발행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대체로 신용도가 낮고 부도가능성이 높아, 할인이 잘 되지 않고, 할인이 되는 경우에도 할인율이 높아 자재 및 장비업체의 공사원가 회수가 어려움.
- 상기 국토부의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 점검 결과, 하수급자의 위반사례 3,091건은 불법어음 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수급자의 위반사례가 다수인 배경에는 시중은행들이 건설업을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하고 외부 경제환경에서 비롯된 자금경색으로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에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 자체를 꺼려하는 점이 작용하고 있음.
-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점도 다수의 위반사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수급인의 부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과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사례는 원수급인의 공사진행에 악영향을 끼침.
- 원수급인은 하도급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일반적으로 현금지급하나, 하수급인은 자금여력, 상황 등에 따라 자재·장비업체에게 다양한 형태로 대금을 지급
- 각종 하수급인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위법상황에 대해 이를 규제할 제도 미비

(2) 전자상거래보증제도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기업간 어음거래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매자 금융제도를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아래에서 언급하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된 어음결제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
 - ① 어음의 배서 및 양도 관행에 의하여 어음 거래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의 지급불능 상황은 관련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음.
 - ② 하도급거래처럼 거래기업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력이 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음결제의 비중이 높아져 해당기업은 결제기간 장기화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가중됨.
 - ③ 특정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낼 경우, 적절한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구매자금융제도는 구매기업에게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①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에게 해당 금액만큼을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구매자금융 방식과 ②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구매 전용카드 방식으로 구분됨.
- 구매자금융제도는 도입초기부터 타깃으로 삼았던 중소기업들의 담보부족, 보증애로, 신용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음.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대금에 대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판매기관에게 신용 보증하는 것임.
 - 공공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7개 시중은행(신한, 하나, 기업, 국민, 우리, 대구, 시티은행)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2006년 1조 7천억원의 전자상거래 보증을 공급하였고, 기술보증은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935억원의 전자상거래 보증을 공급하였으나, 이후 전자상거래 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민간 전업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도 2007년 10월 기준으로 1,460억원의 전자상거래 보증을 공급하였고 향후 ‘e-비즈 보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음.
 - 대금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일반보증 대비 전자상거래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표 1> 전자상거래보증과 일반보증 비교¹⁾

구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70억원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30억원 (보증기금의 동일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매출액 한도	당기매출액의 1/4 (KC3 이상 : 1/3)	당기 매출액의 1/6(KC3 이상 : 1/4)
보증료	0.5~3.0% (KC2 : 1.1%) (KC2 등급 이상 0.1% 차감)	0.5~3.0% (KC2 : 1.2%)
운영은행	신한, 하나, 기업, 국민, 우리, 대구, 시티은행	일반 시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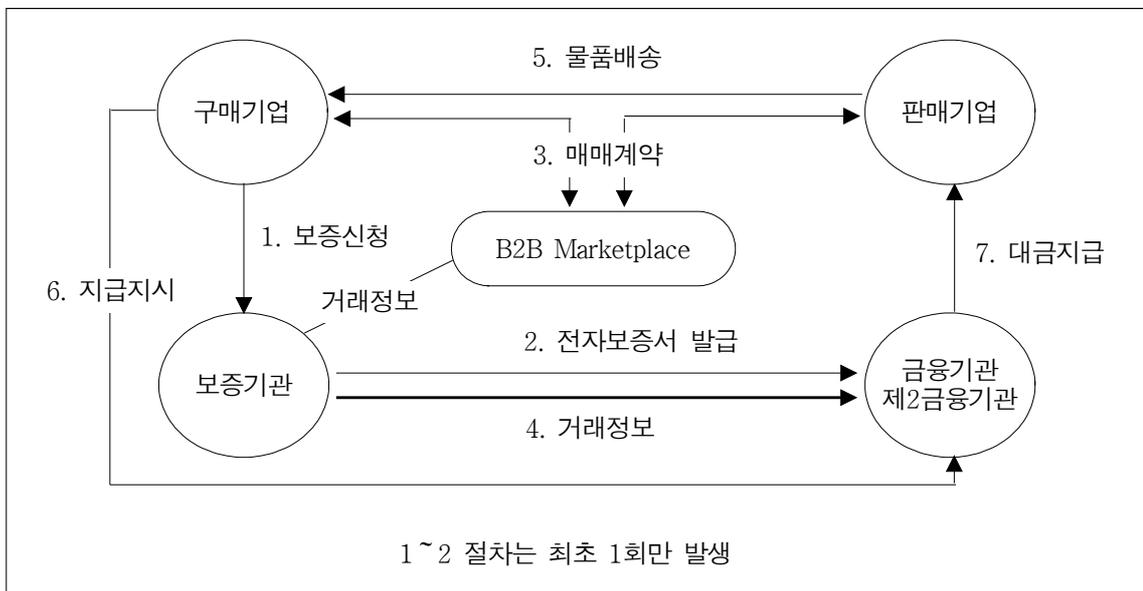
자료 : 대한건설협회(2009), 내부자료

- 중소기업의 신용 및 담보부족으로 구매자금융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하여 대기업이 추천하는 우량 협력사를 구매기업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판매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신용을 보장

1) 이 표에 포함돼 있는 신용등급은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KS1~3, KA1~4, KB1~4, KC1~4, KD1~3, KE1~3으로 구성)에 의한 것으로 KC2와 KC3는 예전 평가등급체계에서 각각 BB-와 B+에 해당함.

- 아래 흐름도에서 나타나듯이,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구매자금융제도를 보증기관의 보증과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한 투명성 제고 등으로 보완한 것임.
-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하수급인의 신용보증을 은행에 제공
 - 하수급인은 은행의 B2B 대출상품(B2B 구매카드, 구매자금대출)으로 자재 및 장비업자에 대한 구매대금을 결제

<그림 3> 전자상거래보증 (대출보증) 흐름도



자료 : 신용보증기금인터넷 사이트,
http://www.kodit.co.kr/html/crdt_guar/cyber_guar/use_guid/guar_kind/cyber_guar.jsp

<표 2> B2B 대출상품 비교

구분	구매카드	구매자금대출
정의	하수급인은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자재·장비업체는 금융기관에 할인요청 하거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하수급인이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매자금 결제용으로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대출
대출기간	최장 180일	최장 180일
결제방식	전자어음 형식으로 만기일에 현금	즉시 현금 결제
금융부담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이자 없음	하수급인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 부담
용도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대금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대금

자료 : 대한건설협회(2009), 내부자료

- 2006년 166개 마켓 플레이스가 운영 중인데, 건설산업과 관련된 마켓 플레이스는 모두 9개고 연간 거래규모는 2.5조원에 이릅니다.
- 가장 대표적인 마켓 플레이스에는 800여개의 하수급인과 15,000여개의 자재·장비업체가 등록돼 있음.

<표 3> B2B 중개형 마켓 플레이스 수 및 거래 규모

(단위 : 개, 조원)

구 분	2005		2006		
	업체수	거래액	업체수	거래액	
합 계	186	13.6	166	16.2	
사업부문	농축산물 및 식음료	15	1.8	15	3.5
	기업소모성자재구매대행	18	3.6	19	3.3
	화 학	13	2.3	8	2.6
	건설자재	9	1.9	9	2.5
	철 강	9	1.5	10	1.8
	기계,의료,전자 등	122	2.5	105	2.5

자료 : 신용보증기금 (2007), 국내 보증시장 현황과 최근 동향

4.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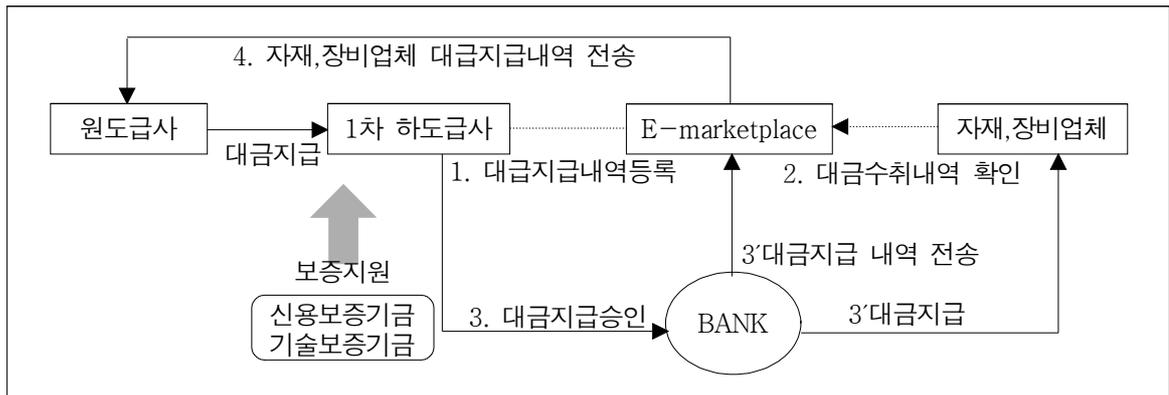
(1)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

- 원수급인에게 지급되는 형식으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발주자의 자금이 하수급인을 거쳐 자재 및 장비업체에게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보증기관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결합된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
- 발주자와 원수급자는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한 하수급인의 대금지급내역을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원수급자가 하수급인의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관행을 통제·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간의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
- 유동성이 부족하고, 신용도 및 담보가 부족한 하수급인에게는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구매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원수급인이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협력사 중에서 전자상거

래보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인을 선정

·최근 대형 종합건설사들은 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 절차를 전자화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

<그림 4>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방안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2009

- 하수급인은 마켓 플레이스에 거래내역을 등록
- 어음지급 관행을 폐지하고 자재·장비업체에게 현금 지급을 하기 위해 구매자금융을 이용하려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야 함.
- 자재 및 장비업체 역시 마켓 플레이스에 가입하여 거래내역을 등록
- 마켓 플레이스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간의 거래내역 등록과 이를 원수급인, 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신용/기술보증기금은 거래정보 및 기업정보를 축적하여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보증기관, 원수급인, 마켓 플레이스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가능

(2)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구축 가능

-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책임지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 및 장비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지급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발생
-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의 목적은 하수급인과 자재 및 장비업자 간의 현금흐름 개선

- 하수급인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① 추가로 확보된 구매자금을 통해 결제 유동성 증가
- ②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무담보보증을 이용하므로 담보제공 부담 없음
- ③ 어음발행 및 여타 여신 이용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
- ④ 현금성 결제로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가격협상 가능
- ⑤ 구매카드 이용액의 최대 0.4% 만큼 법인세액 감면
- ⑥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능력 증가로 원수급인에게 우량 이미지 제고

- 자재·장비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 기대가능
- ② 하수급인의 부도 등 리스크 관리 비용 절감 및 어음관리 비용 절감
- ③ 원수급인의 추천을 받거나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인 하수급인과의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매출처 확대를 위한 영업비용 감소
- ④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비용 감소로 원가 경쟁력 강화

- 국가 및 발주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① 마켓 플레이스 혹은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거래정보와 기업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탈세방지 및 안정적 세수확보 가능
- ② 하수급인과 구매계약을 맺는 자재·장비업체까지 공사대금의 적기지급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선순환구조 형성에 기여
- ③ 하수급인 부도에 따른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통한 분쟁예방 및 공사지연가능성 최소화

④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의 부도에 따른 발주자의 공기지연 등의 피해 방지

(3)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성화 방안

-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 방안 모색 필요
- 건설법상 원수급인의 상호협력평가지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활용하는 하수급인과 협력관계를 맺으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이용실적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게 세제지원이나 세금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성화에 유용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임.
- 구매자금융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동원하였음.

<표 4> 구매자금융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금융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지원(금융기관) ·구매자 금융 취급 실적을 한국은행의 총액 한도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 - 세제 지원(중소기업) ·구매자 금융 활용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 ·공제세액 : (구매자 금융실적-어음발행액)×0.5% ·공제 한도 : 산출세액의 10% ·구매 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처리
어음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당좌 개설 심사를 위한 공동 가이드 라인 마련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부실 기업의 어음 발행 관리 감독 - 어음 발행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기업 어음 발행 정보 추적·관리 ·어음관리 : 지급 은행별→발행 기업별 ·거래 은행에 의한 재무구조 취약 기업 어음 발행 중점 관리 - 어음 발행 기업의 신용 관리 강화 ·어음 부도에 대한 금융 제재 및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의 관리 강화
하도급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결제 방식 개선 ·99년 4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 방식의 조기 정착(현금 결제 확대) - 하도급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을 정부 입찰 심사시 활용 ·현금 결제 이행의 지속적 점검(보상, 제재 시행)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시에 현금 결제 비율 반영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반영 ·구매자 금융 취급 실적을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에 반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구매자금융제도의 개요 및 보완과제, PBR, 2000. 7

- 구매자금융제도의 경우처럼,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성화의 관건은 민간 금융시스템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구매자금의 결제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는데, 다음에 나열하는 것들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1) 신용/기술보증기금의 건설산업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

- 건설산업에 대한 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지급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높아, 보증기금의 보증 배분에서 건설산업의 비중 증가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신용보증기금의 업종별 부실발생률을 보면(2008년 기준) 건설업의 경우 3조 5,066억 원의 보증잔액에서 2,798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여 부실발생률이 8.0%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타업종에 비해 높음.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수수료율에 차감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보증대상이 되는 판매업체의 범위를 사실상 KC2 등급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표 5>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보증 현황

2007년		2008년		증감률	
업체수 (구성비)	잔액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잔액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잔액 (구성비)
18,803개 (9.9%)	32,650억원 (11.4%)	19,993개 (10.3%)	35,066억원 (11.5%)	1,190개 (6.3)	2,416억원 (7.4%)

자료 : 신용보증기금 2008년 연차보고서

- ① 정부의 추가출연, 건설업에 대한 보증을 기피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혹은 전자상거래 보증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보증기관의 면책제도 도입
- ② 원수급인이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량 협력업체를 보증기관에 추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원수급인이 보증기관을 대상으로 협력업체(하수급인)의 신용보강에 적극적으로 협조
 - ⇒ 원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기술력 없이 중층 하도급 구조에서 지대획득의 목적으로 기생하는 업체를 선별하고 보증기관에 추천할 협력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

⇒ 협력사 풀(pool)을 운영하는 원수급인은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운용을 위해 보증기관에 추천하는 협력사의 리스트를 협력사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③ 원수급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펀딩을 하여 보증기금에 전자상거래 보증 목적으로 출연하는 방안

⇒ SKT,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이 3자 협약을 맺어, SKT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2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은 SKT 협력기업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2005년부터 시행 중임.

⇒ 보증기관에 20억원을 출연하면, 250억원(BIS 8% 감안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기본재산 = 12.5)이 전자상거래 보증용으로 공급되고 부분보증(대출예정금액의 85%)과 단기적 성격(1년 4회전 가능)을 고려하면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1,200억원에 이를 수 있음.

⇒ 하도급 계약규모(2007년 기준) 45조 8,521억원에서 자재·장비업체와의 계약규모를 11조원(2007년 완성공사 원가구성에서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약 25%를 이용하여 추산)으로 추정하면, 이 규모를 전자상거래보증제도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금이 1,800억원 정도 필요함.

2) 건설금융을 전자상거래 보증에 활용하는 방안

- 금융시장의 기준에 부합하기에는 건설산업의 회계 투명성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의 신용도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민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음.

-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에 참여하는 원수급인·하수급인·자재 및 장비업체 간의 원활한 자금흐름과 그에 따른 원수급자의 공사이행으로 대지급 위험이 줄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이 보증기관 혹은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자재·장비업 등 국내 건설단체를 대표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마켓 플레이스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보증기관 혹은 금융기관으로서 참여하는 3개 공제조합과 함께 전자상거래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

5. 결론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마켓 플레이스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간의 계약관리를, 결제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하수급인에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이 자재·장비업체에게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토록 하는 역할을, 보증기관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의미하고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의 가능성을 의미
- 전문건설업자와 자재·장비업자의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형성되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였는데,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이러한 전문건설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간에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구축을 지향함.
-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응하고 중층적인 하도급거래에서 투명화와 정상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정보공개 관련 의식의 전환 필요
-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으로 자재·장비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원수급인, 보증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이용을 꺼리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처럼 하수급인이 영업비밀 누출 등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상거래 방식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 전문건설업체도 이에 부합하는 비용구조와 경쟁전략을 채택해야 함.

빈재익(연구위원jipins@cerik.re.kr)